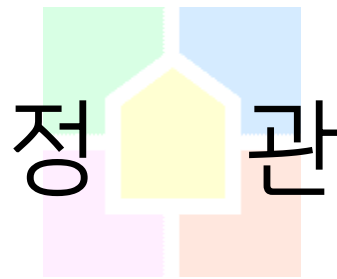


세화도시 주식회사



정 관

제정 2025. 05. 26

변경 2026. 09. 08

제1장 통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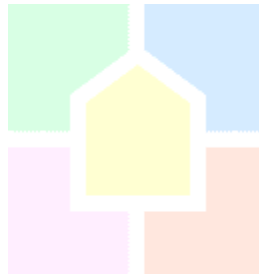
제1조 (상호)

본 회사의 상호는 세화도시 주식회사(이)라고 한다. 영문 상호는 SEHWA DOSI Co., Ltd.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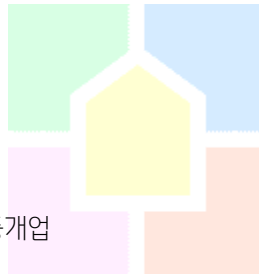
제2조 (사업목적)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1. 도시계획 및 교통 및 환경 관련 교육 서비스업
1. 부동산 교육업 및 컨설팅업
1.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판매업
1.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업
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1.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1. 제본 및 관련 서비스업
1. 공학 연구개발업
1. 공학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1. 공학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 공학 학술연구 용역업
1.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 인문,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1. 인문, 사회과학 조사 서비스업
1. 인문, 사회과학 학술연구 용역업
1. 사무 지원 서비스업
1. 문서 작성 대행업
1. 사진 촬영 및 처리업
1. 행정대집행 및 대집행보조업
1. 주차차금지구역 감시업
1. 냉난방기 및 에어컨크리닝 세척전문업
1. 소규모 일반청소업
1. 건물위생관리업 및 건물청소대행업



- 1. 방역소독업
- 1. 시설소독업
- 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 1. 건축물 일반 청소업
- 1.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관리업
- 1.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유지, 관리, 보수업
- 1. 부동산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업
- 1.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업
- 1. 건물종합관리업
- 1. 건물위생관리업
- 1. 행사 및 이벤트 대행업
- 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1. 근로자파견업
- 1. 인력공급 및 관리업
- 1. 물탱크청소업
- 1. 각종 물품 도소매업
- 1.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업
- 1. 문화,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업
- 1. 실내건축공사업
- 1. 시설경비업
- 1. 기계경비업
- 1. 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중개업
-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 사업장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 사업장은 경기도 고양시내에 설치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전국 각지 또는 해외에 지점 및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sehwadosi.co.kr>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시아경제 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장래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장래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액면금)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액면금은 1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과 동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과 동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의 7종으로 한다.

제9조 (주금납입의 지체)

신주인수인, 발기인 또는 주주는 주금납입을 지체할 경우, 본 회사에게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을 완료할 때까지 납입을 지체한 주금에 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주 및 제3자의 신주인수권)

- (1) 본 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418조 제1항에 따라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상실하거나, 무상증자를 발행하는 등의 사정으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그 처리방법을 정한다.
- (4)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신주를 발행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이익배당을 실시한다.

제11조 (주식의 발행방법)

- (1)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주 및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2)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하고, 신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다.
- (3)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4)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발행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내로 한다.
- (5) 본 회사의 신주발행시 기존 주주에게 배당하는 신주는, 유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하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11조의2 (우선주식)

- (1) 이사회는 우선주식 발행시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우선배당률을 정할 수 있고,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배당한다.
- (2) 이사회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 있어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3) 본 회사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과 의결권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4) 상법 제344조의3 제2항에 따라 본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1조의3 (전환우선주식)

- (1)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2)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 및 주식의 수는 전환하기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 및 주식의 수와 동일하다.
- (3)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일로부터 30년 이하의 범위로 정한다.
- (4)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신주를 발행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이익배당을 실시한다.

제11조의4 (상환우선주식)

- (1)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 청구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2) 상환우선주식은 우선주식 발행시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우선배당률을 정하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액면가가 아닌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의 범위에서 우선배당률을 정할 수 있다.
- (3)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발행가액 ×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 ÷ 365 × 우선배당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단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기준에서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하여 상환가액을 정할 수 있다.
- (4)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다음날부터 발행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본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5) 본 회사는 상환우선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에서 제외한다.
- (6) 본 회사가 상환우선주식을 상환할 경우에는, 상환일정, 상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해야 한다.

제11조의5 (상환전환우선주식)

- (1)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11조의3의 전환우선주식임과 동시에 제11조의4의 상환우선주식인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2)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준용한다.

제11조의6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 (1)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잔여재산은 금전,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채권 등으로서, 청산인이 이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금전으로 환가하되, 잔여재산의 가액은 환가절차를 완료한 날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 (2) 제1항의 우선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보다 청산 등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고,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위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을 수 있다.
- (3) 제1항의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주식의 양도)

주주는 그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제한)

- (1) 본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상법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 (2)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3) 본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할 수 없다.

제12조의3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본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12조의4 (자기주식의 처분)

본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13조 (주권의 명의개서 등)

- (1)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 주권과 본 회사가 선정한 양식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주가 증여, 상속, 유증, 강제집행을 통한 취득 등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본 회사는 주주명부의 변경,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선정한다.

제14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주주가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할 경우, 주권과 본 회사가 선정한 양식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수정,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15조 (주권의 재발행)

- (1) 주주가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경우, 구주권 및 본 회사가 선정한 양식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주주가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할 경우,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과 본 회사가 선정한 양식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수수료)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 본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정지)

- (1) 본 회사는 매년 결산기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2)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주주명부의 변경을 정지하는 기준일 및 폐쇄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이 사실을 2주간 전에 공고한다.

제18조 (주주의 성명, 주소 등의 신고)

본 회사의 주주, 등록된 질권자, 주식의 신탁회사는 본 회사에게 성명(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다.

제3장 사채

제19조 (사채의 발행)

- (1)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한 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 (2)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3)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사채모집을 위하여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 (전환사채의 발행)

-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위 제1항의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 (3)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50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500억 원은 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이사회가 사채발행 시 정한다.
-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하되, 이사회는 결정으로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5)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21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50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500억 원은 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이사회가 사채발행시 정한다.
- (4)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하되, 이사회는 결정으로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교환사채의 액수, 교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교환의 조건 등을 결정한다.

제22조의 2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이익참가 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위 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10 비율로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 (3)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4)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23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8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4조 (주주총회의 소집)

- (1) 본 회사는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수시로 소집한다.
- (2)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총회를 소집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대표이사의 유고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한 이사가 총회를 소집한다.

제25조 (소집통지의 절차)

- (1) 본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 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 (주주총회의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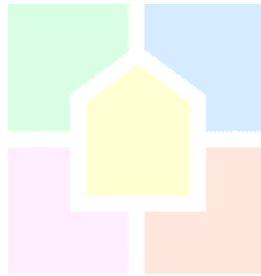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 유고시 또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7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1)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를 진행함에 있어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폭언, 폭력 기타 유형력을 행사 하여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주주의 발언 횟수 또는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 (2) 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제369조 제2항,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상법 제409조 제2항, 제3항, 제542조의12 제3항, 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2.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3.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4.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5.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6.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7. 자본의 감소
 8.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29조 (의결권 및 의결권의 행사방법)

- (1)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2) 본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3)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4)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 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6)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 (7)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0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본 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

제31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및 선임)

- (1)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 및 비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 (2)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되, 본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3)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감사의 선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가 종료된 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3조 (임원의 보결 선임)

본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 명일 때는 각자 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제35조 (대표이사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본 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여서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36조 (업무집행 및 직무대행자)

- (1) 대표이사는 본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이사, 감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 (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때, 대표권이 없는 사내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사내이사로 재임한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고, 재임기간이 동일한 사내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연 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제한)

- (1)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3) 임원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과실로 인하여 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상법 제399조 제1항), 그 책임은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한도로 한다. 다만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감사의 직무)

- (1)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2)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영업과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3)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9조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유족보상금)

- (1)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 매년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 (2) 임원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퇴직금은 여타 직원 의 경우에 준한다.
- (3) 임원에 대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39조의2 (직무발명보상)

- (1) 본 회사의 임직원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즉시 이 사실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본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발명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명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제1항의 경우, 본 회사의 임직원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본 회사에게 양도하고, 본 회사는 이를 승계한다. 다만 본 회사는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 (3) 기타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한다.

제6장 이사회

제40조 (이사회)

- (1) 본 회사는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 이사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41조 (이사회 내의 위원회)

- (1) 본 회사는 필요시 이사회 내에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제42조 (이사회의 소집절차)

- (1) 본 회사의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4)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책정,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안의 심사, 채택
 4.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5.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6.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7. 대규모 자금의 차입
 8. 근로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10.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유상증자, 무상증자 등)
 11. 핵심 자산의 취득, 매각에 관한 사항
 12. 주요 소송의 제기, 응소, 조정, 화해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겸업, 겸직허가
 14. 주식의 양도승인(주식양도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한정)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의 취소결정
 16. 계약상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8. 기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중요사항
-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의 이사가 2인 이하여서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 2 내지 6, 제12조의 2, 제12조의 4, 제19조 내지 제22조, 제35조, 제49조의2, 제50조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고,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 본다.
 2. 제1항 제1호, 3호, 4호, 10호, 14호, 15호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정사항으로 한다.

제44조 (이사회의 결의)

-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 (2) 이사회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5조 (이사회 의사록)

- (1)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

제46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7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 (1) 본 회사의 이사는 정기 주주총회의 6주 전에 다음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사는 위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 (2) 이사는 정기총회의 1주 전부터 위 1항의 서류 및 영업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48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년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 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9조 (이익배당)

- (1) 이익배당은 매결산기 말 당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2) 이익의 배당은 현금, 주식,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3)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본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통주식 또는 종류 주식에 배당할 주식을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하거나, 보통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4) 위 3항에 따라 현물 배당을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 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 (5)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 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정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중간배당)

- (1) 본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해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 주식,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한다.
- (2)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3) 본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5) 본 회사가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 해당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제51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

- (1) 주주는 배당금 지급을 결정한 결의일로부터 5년 내에 배당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2)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제52조 (내부규정)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규칙 등 내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53조 (설립시의 사업연도)

설립시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처음 도래하는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4조 (발기인의 성명, 주소 등)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한다.